

■ 인지세 안내

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,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인지세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.

※ 21.01.01부터 개정된 인지세법과 관련하여 인지세 (아래 인지세액표 참고)을 납입하시고 전자수입인지를 아파트 등기 시 반드시 제출 하셔야 합니다.
 ※ 분양계약자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,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 계약자에게 있습니다.

■ 인지세 과세대상과 납부 기한·방법 (※인지세법 제1조,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)

과세 대상	부동산 계약서 / 분양권 전매계약서
납부 기한	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 납부
납부 방법	계약서 작성 시마다 정부수입인지 구매하여 납부(전자수입인지 사이트 (e-revenuestamp.or.kr) 또는 우체국·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시 첨부

■ 인지세액

과세 문서	기재 금액	세액	기재 금액	세액
부동산, 선박·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	1천만원 초과 ~ 3천만원 이하	20,000원	1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	150,000원
	3천만원 초과 ~ 5천만원 이하	40,000원	10억 초과 ~	350,000원
	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	70,000원	-	-

■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안내

①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 접속(e-revenuestamp.or.kr) 또는 인터넷 검색창 '전자수입인지' 검색

②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

③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 후 구매

④ 납부 정보 입력 후 결제

- 용도: 인지세 납부

- 금액: 분양 금액별 상이(55F타입: 35만원, 그 외 타입: 15만원)

- 과세문서 종류: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

- 건수: 1건

⑤ 출력: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재발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)